

유흥주점 영업자 여러분께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10시이후 18세미만청소년에게接客업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 오후10시이후 18세미만청소년을 손님으로 영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 영업소내에서接客행위 (뒷면참조) 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0세미만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등으로 규제된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심야 (오전0시이후 오전6시까지의 시간)</u> 에도 영업할 경우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관할경찰서를 통해 공안위원회에 「심야에서의 주류제공음식점영업 영업개시 신고서」 (유흥주점 영업개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u>주의!! 심야에 유흥주점을 영업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유흥주점의 개시신고에 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의 조례로 정하는 제1종지역 (주거계지역) 에서는 심야 (오전0시이후 오전6시까지의 시간) 에 유흥주점을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 신고시의 첨부서류는 영업방법, 영업소의 평면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경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명부 (뒷면참조) 을 영업소에 비치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接客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법정의 신분확인서류로 본적 또는 국적 (일본국적이 아닌 분은 체류자격, 체류기간) 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신분확인에 관한 기록과 확인서류의 복사를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유흥접객행위

담소·술을 따라주는 행위



손님 곁에 앉아서
말상대를 하거나
술등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카운터를 끼웠더라도 접대에 해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 입가에 음식물을
가져가는 행위



손님과의 밀착행위



춤·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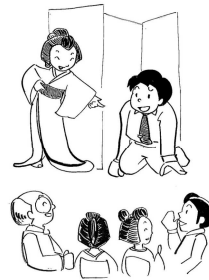
객실등에서 특정소수 손님에게
가무(노래·춤) 쇼등을 보여 주는
행위

노래등



손님 곁에 앉아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
도록 권유하거나 손님의 노래에 손장
단을 맞추며 박수를 치거나 칭찬하는
행위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행위

유희행위등



특정소수 손님과 함께 유희·
게임·경기등을 하는 행위

종사자명부에 대하여

종사자명부	기재사항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고용년월일 ○종사하는 업무내용 ○퇴직년월일
접객종업자의 신분확인 등	확인사항	○일본국적인 분 ·본적 (도도부현명) ·생년월일 ○일본국적이 아닌 분 ·국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확인서류	○일본국적인 분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본적 (도도부현명) 및 생년월일 이 기재된 것) ·여권 (패스포트) ·기타 관공청에서 발급 또는 발행된 서류로서 본적 (도도부현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것 ※개인번호(마이넘버)의 기재가 없는 것 ○일본국적이 아닌 분 ·체류카드 ·여권 (패스포트) ·특별영주자증명서등
	기록사항	○일본국적인 분~확인년월일, 본적(도도부현명) ○일본국적이 아닌 분~확인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등
	확인서류의 기록작성· 보존방법	○종사자명부에 규정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서류의 복사를 작 성하여 종사자명부에 첨부해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적기록인 종사자명부일 경우는 확인사항을 전자적으 로 기록하고 확인서류의 복사 또는 확인서류를 스캐너로 읽 어낸 전자적기록을 전자적종사자명부와 조회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보존해야 합니다.